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신설 등〉
■ 이진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717호)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 신설 및 실무 간사위원 지정(안 제3조, 제4조 및 제9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견태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2. 10.

다. 회 부 일 : 2026. 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이나, 실제 범부처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의 연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러 당연직 위원 중 1인에 불과하여 주도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범부처 과학기술혁신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무회의 배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과학기술자문회의에는 참석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 결정과 집행 사이의 단절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각각 분절적으로 존재하여 국가 R&D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도록 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및 간사위원으로 지정함으로써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 신설 및 실무 간사위원 지정(안 제3조, 제4조 및 제9조)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 직제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 및 간사위원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석부의장을 맡도록 하고(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보좌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며(안 제3조제3항), 의장의 직무대행 체계를 수석부의장과 부의장으로 구분하여 정비하고(안 제4조),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간사위원으로 지정(안 제9조제1항)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u>부의장 1명</u> 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 <u>수석부의장 1명,</u> <u>부의장 1명</u> ----- -----.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u>부의장은</u>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 ----- <u>수석부의장</u> <u>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u> <u>며, 부의장은</u> -----

현행	개정안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생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신설> <신설> ④·⑤ (생략) 제4조(의장) ① (생략)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부의장에게 전원회의에 관한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회의 또는 심의회의에 관하여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면 해당 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 -----. ③ ----- -----. 1. (현행과 같음) 2.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④·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석부 의장에게----- -----. ③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문회의에 관하여는 부의장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 에 관하여는 수석부의장에게----- -----. -----수석부의장 또는 부의 장도-----

현행	개정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 -----.
제5조(회의) ① ~ ③ (생략)	제5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의는 제3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같은 항 <u>제2호의</u> 위원으로 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제2조제2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 ----- ----- <u>제2호부터</u> <u>제4호까지의</u> ----- -----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기능 및 사무기구 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u>둘 수 있다.</u>	제9조(간사기능 및 사무기구 등) ① ----- ----- ----- ----- ----- <u>두며, 간사</u> <u>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u> <u>이 된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¹⁾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한민국헌법」 제127조제3항²⁾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창의적 피드백을 위한 ‘자문’ 기능과 범부처 R&D 예산 및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과학기술계 최고 의사결정 기구임.

- 위원회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현재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체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
 - 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나.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 가. ~ 어. (생략)

제3조(구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학기술 또는 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헌법」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적으로는 현행법 시행령³⁾에 따라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장관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 담당 보좌관(현재 AI미래기획수석보좌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으며, 학계 및 산업계의 외부 전문가(자문위원 10인, 심의위원 10인 등)로 구성되어 운영 중임.

< 2026년 2월 말 기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현황 >

구분	위원	소속 및 직위	임기
의장	대통령	-	-
부의장	이경수	(주)인에이블퓨전 의장	'25.12.29.~'26.12.28.
간사위원	(당연직)	AI미래기획수석	-
자문위원 (10)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	'26.2.26.~'27.2.25.
	박성동	(주)스페이스파크 대표이사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윤진희	인하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이승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위원	
	이승복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이준영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장병탁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호원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심의위원 (10)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	
	김성표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김희정	삼성중공업 선형추진기연구그룹장	
	부경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공학부 교수	
	성은하	차병원 글로벌특허실장	
	신진우	KAIST ICT 석좌교수	
	지승욱	생명공학연구원 S바이오헬스연구소장	
	최은영	서울대학교 의과학과 교수	
	한재홍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조(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구분	위원	소속 및 직위	임기
정부위원	(당연직)	재정경제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수석부의장으로 신설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된 위원들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 “혁신본부장”이라 함)을 당연직 위원 및 간사로 추가하려는 것임. 이는 그간 지적되어 온 정책 수립(자문회의)과 실무 집행(혁신본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R&D 거버넌스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첫째, 수석부의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규정하는 것(안 제3조제2항)은, 현행법상 의장(대통령)에게 부여된 부의장 지명권 등 인선에 관한 자율적 재량권을 법률로써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수석부의장과 부의장을 이원화하고 있으나, 양

자 간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나 위상 차이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의사결정 구조의 혼선이 발생하거나 기존 민간 부의장의 자문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바,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현재 시행령상 당연직 위원인 관계 부처 장관 및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혁신본부장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안 제3조제3항), 주요 부처를 대표하는 장관급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차관급인 혁신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위원회의 격(格)과 체계상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혁신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또는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이미 실무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혁신본부장 참석 사례 >

구분	회의 유형	참석 유형	참석 횟수	참석 회의
이재명 정부	전원	안건	1	제1회('25.8.22(금))
	심의	위원	1 (대참)	제1회('25.6.30(월))
윤석열 정부	전원	안건	1	제6회('24. 4. 25.(목))
	심의	위원	3 (대참)	제5회('23.9.26(화)), 제6회('23.12.20(수)), 제10회('24.8.26(월))
		안건	4	제1회('22.12.14(수)), 제2회('23.2.22(수)), 제3회('23.4.19(수)), 제4회('23.8.22(화))
			1 (배석)	제9회('24.6.27.(화))
문재인 정부	심의	위원	5 (대참)	제4회('19.2.14(목)), 제5회('19.3.26(화)), 제14회('21.2.25(목)), 제17회('21.8.31.(화)), 제20회('22. 4. 26.(화))
			3 (배석)	제12회('20.8.26(수)), 제15회('21.4.30(금)), 제18회('21.10.12.(화))
		안건	8	제1회('18.6.29(금)), 제2회('18.6.29(금)), 제6회('19.6.28(금)), 제7회('19.8.28.(수)), 제8회('19.12.23.(월)), 제9회('20.3.24(화)), 제10회('20.5.13(수)), 제11회('20.6.26(금))

- 셋째, 혁신본부장을 간사위원으로 당연직화하는 것(안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그간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보좌관)이 간사를 맡아 의장의 국정 운영 방향을 충실히 보좌하며 부처 간 쟁점을 조정해 온 운영 관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무 부처의 본부장이 간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의장에 대한 근접 보좌 및 범부처 차원의 중립적인 회의 운영 지원 기능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 현황 >

구분		간사
이명박 정부	1기	대통령비서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2기	대통령비서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3기	대통령비서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4기	대통령비서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박근혜 정부	1기	대통령실비서실 미래전략수석비서관
	2기	대통령실비서실 미래전략수석비서관
	3기	대통령실비서실 미래전략수석비서관
	4기	대통령실비서실 미래전략수석비서관
문재인 정부	1기	대통령실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2기	대통령실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3기	대통령실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4기	대통령실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윤석열 정부	1기	대통령실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2기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 넷째,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 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안 제3조제3항)과 관련하여, 현행은 정부 부처나 비서실의 구조 변화에 따라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을 통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해가며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고정하여 정하는 것은 유연한 위원회 구성을 저해하고 행정부나 대통령의 조직 운영 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민간 중심의 대통령 직속기구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민간 과학계의 역할이 약화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고,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기능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6